



#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

정원석 연구위원

-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득 비과세를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.
 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과,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임.
-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장기저축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첫째,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여 저축률 제고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.
  -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이 갖고 있는 산업자본 공급, 자본시장에서의 역할, 그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둘째,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 - 근로기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은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계층에도 시급한 과제임.
  - 공적연금을 보충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 중 보험회사의 세제비 적격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3.8%에 이룸.
  -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강화는 노후소득원 마련이 절실한 중산층의 노후소득원 마련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.
- 세금 납부 방법의 규칙을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.
  -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 경우,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.

## 1. 검토배경



-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.
  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·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함.
  - 해당 법안의 개정이유는 금융소득 비과세를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임.
    -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“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한다”고 적시하고 있음.
    -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에 관한 과세 요건 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)의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.
  
-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, 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 및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  -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 및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.
  -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 및 수익 감소가 예상됨.
    -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약 50.5%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.<sup>1)</sup>
  
- 본고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조건 변화가 경제주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정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함.

1) 보험연구원 내부자료.

## 2.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의 효과



### 가.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안

- 저축성보험이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를 지칭함.<sup>2)</sup>
  -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기간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여 보험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임.
    - 장기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반 저축성보험과, 펀드처럼 주식·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변액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음.
    - 대부분의 장기저축성보험은 장기저축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(이하 '연금보험') 혹은 연금전환 특약을 포함한 보험상품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.
-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.<sup>3)</sup>
    - 첫째,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가 2억 원 이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(이하 '즉시연금')
    - 둘째, 계약자가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(이하 '월납식 보험')
  - 납입방법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차익에 대한 예외규정은 장기저축을 통한 가계의 재산형성 및 노후소득원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.
-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총액을 1억 원 이하로 축소하는 것임.

2)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1-2조 제3호, 제4호 참조.

3) 본고에서는 시행령 개정 시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개략적으로 소개함. 자세한 내용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5조를 참조.

- 세제혜택 한도 총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들 경우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이던 즉시연금 및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월납식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가입유인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.

## 나.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인한 영향

-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.

- 지금까지 장기저축성보험 수요자들은 장기저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성 제약보다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.
-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가입자의 장기저축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은 남아있는 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입유인은 줄어들게 됨.
-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10년 이상 장기저축 가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.

-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(Individual Savings Account, 이하 'ISA')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음.

- 우리나라 2015년 기준 가계 저축률은 5.3%로 OECD 평균인 6.1%에 비해 낮은 수준임.<sup>4)</sup>
- 정부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저축률 제고를 위해 5년 이하의 중·단기 저축에 대해 1억 원까지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ISA를 도입하였음.<sup>5)</sup>
- 이를 감안할 때 유일한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최근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.

-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.

-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.6%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임.
  - 노인빈곤층 가운데 46%가 근로기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이므로,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는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시

4) OECD(2016), [http://www.oecd-ilibrary.org/economics/household-saving-rates-forecasts\\_2074384x-table7](http://www.oecd-ilibrary.org/economics/household-saving-rates-forecasts_2074384x-table7).

5) ISA 가입자에게는 최대 원금 1억 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, 2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아닌 9.9%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함.

급한 과제임.<sup>6)</sup>

- 공적연금(1층)과 퇴직연금(2층)으로 준비가 가능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%에 불과함.
  - OECD가 권장하는 노후 소득대체율 70%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(3층)의 준비가 필수적임.
  -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세제혜택은 가입자의 개인연금 가입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임.
  -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개인연금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및 확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임.

#### ■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(이하 '연금저축')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.

-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비과세(Exempt), 운용 시 발생하는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(Exempt)하고 연금 수령 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과세(Taxation)함.<sup>7)</sup>
- 반면,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고(Taxation),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(Exempt)하고 연금 수령 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비과세(Exempt)함.<sup>8)</sup>
- 따라서, EET와 TEE는 과세 시점, 즉 연금 납입 시 혹은 연금 수령 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 과정에서 과세 누락은 발생하지 않음.

#### ■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장기저축성보험을 통한 개인연금의 한 축인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.

- 2015년 기준 개인연금 적립금 292.2조 원 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.5조 원으로 이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 대비 63.8%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<sup>9)</sup>
  - 이는 주로 연금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함.
-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 개인은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상품과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.
  - 미국 등 선진국 역시 개인에게 적합한 연금상품 및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EET 방식 연금과 TEE 방식 연금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.

6) 정원석·김미화(2015), 『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』, 조사자료집, 보험연구원.

7) 이를 납입 시 비과세(E), 운용 시 비과세(E) 그리고 수령 시 과세(T)한다 하여 EET 과세방식이라 칭함.

8) 이를 납입 시 과세(T), 운용 시 비과세(E) 그리고 수령 시 비과세(E)한다 하여 TEE 과세방식이라 칭함.

9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6), “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% 수준에 불과”.

### 3. 결론



-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한도 축소는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.
  - 이는 ISA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저축과 국민자산 형성을 활성화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.
    -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의 안정적인 산업자본으로서의 역할, 자본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 투자자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 
- 또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국민의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위축시킬 수 있음.
  -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고, 국민의 42%가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.<sup>10)</sup>
  -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축소는 개인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여 전체적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.
    - 세수확대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중·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반면교사(反面教師)로 삼을 필요가 있음.<sup>11)</sup>
  
-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  -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저축의 수단 및 개인연금 선택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장기저축 및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  -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.
  - 소득세법 개정은 직·간접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 및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.
    - 따라서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 [kiri](#)

10) 보험연구원(2016), 『보험소비자 설문조사』.

11) 정원석·문성훈(2016), 「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가입행태 변화」, 『세무와 회계저널』.